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민영주택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66-0430)

| 주택유형  | 규제지역 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대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6.06.08.)로부터 1년 | 없음                                    | 미적용    |

| 구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05.15.(금) | 2026.07.07.(화)   | 2026.07.13.(월) | 2026.07.16.(목) | 2026.07.20.(월)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 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 잔여세대 (무순위) | ○     |       |        |         | X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07.(화)이며,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7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13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무순위(사후) 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07.13.(월)                                                                                     | 2026.07.16.(목)                                                   | 2026.07.20.(월)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건본주택</li> <li>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93-28번지</li> </ul>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6.08.)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40-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동 총 430세대 중 잔여 51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br>(타입) | 잔여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            |    |                 |              |       | 동           | 호                                                                                                               |
| 2026910174 | 01 | 074.6595A       | 74A          | 24    | 104         | 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1701,1801,1901,2001,2101,2201,2301,2401,2501 |
|            | 02 | 084.9615B       | 84B          | 27    | 102         | 101,201,301,401,501,601,901,1001,1101,1201,1301,1401                                                            |
|            |    |                 |              |       | 103         | 101,201,301,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약식<br>표기<br>(타입) | 세대수 | 동별<br>(라인)         | 층<br>(구분) | 해당<br>세대수 | 분양가         |             |             | 계약금<br>(5%) |            | 중도금 (60%)  |            |            |            |            |            | 잔금<br>(35%) |
|------------------|-----|--------------------|-----------|-----------|-------------|-------------|-------------|-------------|------------|------------|------------|------------|------------|------------|------------|-------------|
|                  |     |                    |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총분양가        | 1차          | 2차         | 10%        | 10%        | 10%        | 10%        | 10%        | 10%        |             |
|                  |     |                    |           |           |             |             |             | 계약시         | 30일 이내     | '26.12.10. | '27.04.12. | '27.08.10. | '28.02.10. | '28.06.12. | '28.10.10. | 입주예정일       |
| 74A              | 24  | 104동 1호            | 2층        | 1         | 362,194,820 | 361,905,180 | 724,100,000 | 10,000,000  | 26,205,000 | 72,410,000 | 72,410,000 | 72,410,000 | 72,410,000 | 72,410,000 | 72,410,000 | 253,435,000 |
|                  |     |                    | 3층        | 1         | 368,597,380 | 368,302,620 | 736,900,000 | 10,000,000  | 26,845,000 | 73,690,000 | 73,690,000 | 73,690,000 | 73,690,000 | 73,690,000 | 73,690,000 | 257,915,000 |
|                  |     |                    | 4층        | 1         | 373,499,340 | 373,200,660 | 746,700,000 | 10,000,000  | 27,335,000 | 74,670,000 | 74,670,000 | 74,670,000 | 74,670,000 | 74,670,000 | 74,670,000 | 261,345,000 |
|                  |     |                    | 5층~9층     | 5         | 375,049,960 | 374,750,040 | 749,800,000 | 10,000,000  | 27,490,000 | 74,980,000 | 74,980,000 | 74,980,000 | 74,980,000 | 74,980,000 | 74,980,000 | 262,430,000 |
|                  |     |                    | 10층 이상    | 16        | 376,500,540 | 376,199,460 | 752,700,000 | 10,000,000  | 27,635,000 | 75,270,000 | 75,270,000 | 75,270,000 | 75,270,000 | 75,270,000 | 75,270,000 | 263,445,000 |
| 84B              | 27  | 102동 1호<br>103동 1호 | 1층        | 2         | 390,656,200 | 390,343,800 | 781,000,000 | 10,000,000  | 29,05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273,350,000 |
|                  |     |                    | 2층        | 2         | 398,359,280 | 398,040,720 | 796,400,000 | 10,000,000  | 29,820,000 | 79,640,000 | 79,640,000 | 79,640,000 | 79,640,000 | 79,640,000 | 79,640,000 | 278,740,000 |
|                  |     |                    | 3층        | 2         | 404,561,760 | 404,238,240 | 808,800,000 | 10,000,000  | 30,44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283,080,000 |
|                  |     |                    | 4층        | 2         | 409,263,640 | 408,936,360 | 818,200,000 | 10,000,000  | 30,910,000 | 81,820,000 | 81,820,000 | 81,820,000 | 81,820,000 | 81,820,000 | 81,820,000 | 286,370,000 |
|                  |     |                    | 5층~9층     | 8         | 411,114,380 | 410,785,620 | 821,900,000 | 10,000,000  | 31,095,000 | 82,190,000 | 82,190,000 | 82,190,000 | 82,190,000 | 82,190,000 | 82,190,000 | 287,665,000 |
|                  |     |                    | 10층 이상    | 11        | 412,815,060 | 412,484,940 | 825,300,000 | 10,000,000  | 31,265,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288,855,0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1,2차) | 하나은행 | 112-910018-62505         | 신한자산신탁(주) |
| 분양대금 납부계좌 (중도금, 잔금)  |      |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 (가상계좌) |           |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본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4동 501호 계약자 → ‘10405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주택전시관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통장 이용 등 계약금 납부 주체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되며 부정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li> <li>■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청약신청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li> <li>-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li> <li>-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li>-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ul> </li> </ul>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li> <li>■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li> </ul>                                                                                                                                   |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     |                                                                                                                                                                                                                                                                                                                                  |
|-----|----------------------------------------------------------------------------------------------------------------------------------------------------------------------------------------------------------------------------------------------------------------------------------------------------------------------------------|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6.07.16.(목) ~ 2026.07.25.(토) (10일간)<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문자  | - 제공일시 : 2026.07.1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 입주자) 제출 서류 안내 ※ 아래의 제출 서류는 금회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7.7.)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동서류                    | ○    |             | 신분증                   | 본인<br>(당첨자)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br>※온라인발급(전자인감)의 경우 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신한자산신탁(주))]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br>입증서류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br>-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                         | ○    |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br>증빙서류 | 본인<br>(당첨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및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세대원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부적격 소명자료<br>(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 위임장                         | 계약자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 계약자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당첨자 계약체결

| 구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6.07.20.(월) 10:00 ~ 17:00 |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93-28번지]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해당서류                | 비고                               |
|-----------------------------------|---------------------|----------------------------------|
| 공동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
|                                   | 주민등록표등본             |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계약금 현금수납 불가             |
| 제3자 대리 계약 시<br>(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공동서류                | 상기 공동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
|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7.21.(화)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주택형별 진행순서는 추후 공지)
- 각 주택형별 진행시간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7.21.(화)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div>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div> <div>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div> <div>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div> <div>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div> <div>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div> <div>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div> <div>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div> <div>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div> <div>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div> <div>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div> <div>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div> <div>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div> <div>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div> <div>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div> <div>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div> <div>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div> <div>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div>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div>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div> |        |         |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        |     |      |           |                  |        |         |     |           |      |        |     |     |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                |        |     |      |           |                  |        |         |     |           |      |        |     |     |              |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        |     |      |           |                  |        |         |     |           |      |        |     |     |              |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br/>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br/>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br/>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br/>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br/>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 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각각 50%)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 초과 |
|-----------|-------------------|-------------------|------------------|------------------|--------|
| 세액(균등 납부)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나 대출기관의 내부 규정 등으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시 이자후불제 대출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관계법령 대출상품의 종류·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 는 시행위탁자가 대납(잔금납부시 사업주체에게 전액 지급)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잔금납부시 사업주체에게 전액 지급)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알선은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 및 대출이자를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 호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베가                           | 현대엔지니어링(주)           |
| 법인등록번호 | 110111-3543801                         | 121111-0285205                  | 110111-2153015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 6층 일부(소사본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93-28번지

■ 분양문의 : 1866-0430

■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hec.co.kr>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당 사업에 대한 의문 사항은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대표번호 1866-0430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